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53호
2019. 8. 9.(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99호)1

공 고(4)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19-711호)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12호)5
-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713호)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15호)10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89-3	오정로78번길 25-18	2019. 8. 9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89-13, -24	오정로78번길 25-14	2019. 8. 9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26-28	새말2길 39	2019. 8. 9	건물신축	옛지명(새말) 명칭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덕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람

- 기 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장 소 : 대덕구청 세무과 및 인터넷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http://www.tax.daejeon.go.kr>)
- 열람내용: '19. 1. 1. ~ 5. 31.까지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안)
(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대덕구청 세무과 및 인터넷(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 제출방법 : 대덕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19.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19.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감정원 3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 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무과 및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의견가격
	원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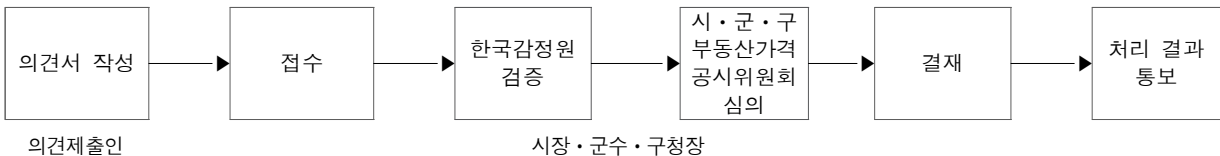
2019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화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전선관 설치	대화동 산3-30	36	소형고압블럭	2	'19.8. ~ '19.12. (착공일로부터 5개월)	2.4 (5개월)	0.392
2	계족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전선관 설치	읍내동 74-4	36	소형고압블럭	26	'19.8. ~ '19.12. (착공일로부터 5개월)	31.2 (5개월)	0.632

2019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위치도 및 사진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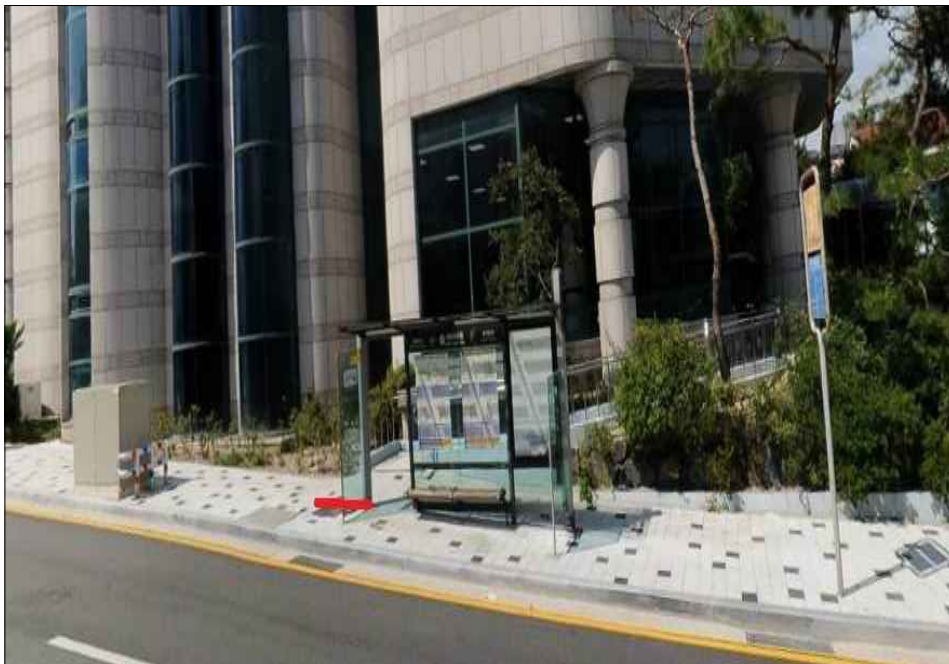
굴착위치

도로명 주소없음 (대화동 산 3-30) / 체육재활원 50560

위 치 도



사 진 대 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

굴착위치

대덕구 계족로 750(읍내동 74-4) / 읍내동 현대아파트 50730

위 치 도



사 진 대 지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284번지 소재 공유재산(돼지식당)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처분내용 :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3. 처분원인 : 공유재산(가설건축물) 원상복구 미이행
4. 처분대상

소 재 지	대 상	대집행 방법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284	식당 내부 집기비품, 부속창고 물품	제3자 대집행 후 비용청구	돼지식당

5. 공고기간 : 2019. 8. 9. ~ 2019. 8. 23.(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위 공고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 최 순 애 귀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003번길 161-27(오정동)

2019년 3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233호로 귀하 소유의 식당 자재(집기류, 창고부속물 등)을 2019년 3월 23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9년8월26일 10:00 ~	대덕구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	홍경철	
		지방행정주사보	김승록	

2019년 8월 7일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화로132번안길	소방용수시설 (지상식소화전) 설치	대화동 52-0-13	-	소형고압블럭	2	'19.8. ~ '19.10. (착공일로부터 3개월)	3.0 (착공일로부터 30일)	1.0 (허가일로부터 10년)
2	동춘당로 31번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	송촌동 220-7	-	소형고압블럭	2	'19.8. ~ '19.10. (착공일로부터 3개월)	3.0 (착공일로부터 30일)	1.0 (허가일로부터 10년)

2019년 8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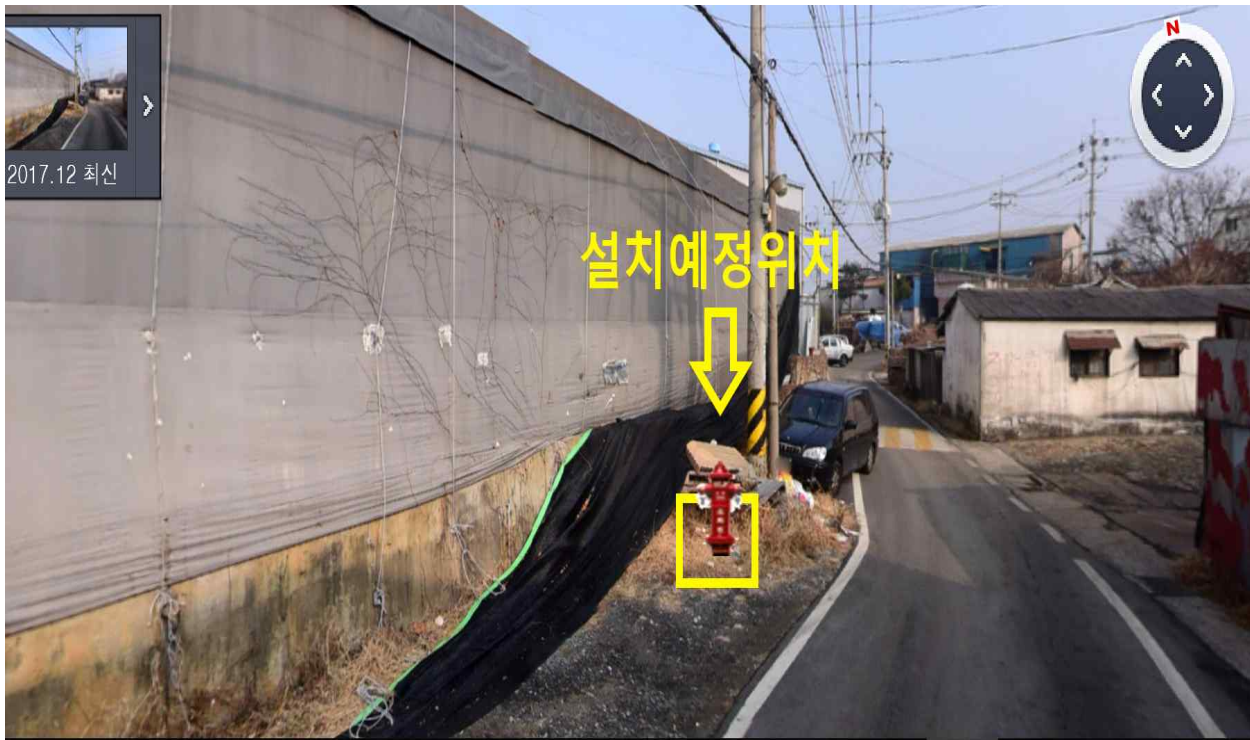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대덕구 대화동 520-13 옆 >



↑ 위치도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송촌동 220-7〉



↑ 위치도



설치 전

설치 후

↑ 현장사진